

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6. .
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사회복지 업무 신설 및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
- 나. 안전정책 총괄 조직 개편 및 시설 건립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과 단위개편

1) 명칭변경

가) 건설방재과 → 안전건설과

나) 녹지공원과 → 공원녹지과 ※ 공원녹지과 직제 : 공원관리 - 산림녹지

2) 분장사무 조정

가) 행정지원국장 평생교육과 사무에 “체육시설물 관리”를
민원지적과 사무에 “새주소”를 각각 추가

나)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 사무 중 “주민생활지원, 통합조사, 생활보장, 지원연계”를
“생활지원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, 생활보장”으로 조정하고,

사회복지과 사무 중 “복지서비스, 노인정책, 여성복지, 아동보육,
장애인복지”를 “노인정책, 여성복지 및 외국인 정책, 보육, 장애인복지, 드림스타트”
로 조정

다) 건설도시국장 건설방재과 사무 중 “건설행정”을 “안전정책 총괄 및
건설행정”으로 조정하고,

녹지공원과 사무 중 “산림보호·녹지관리 및 공원관리”를 “공원관리,
산림보호 및 녹지관리”로 조정하며,

시설지원과 사무 중 “대형 체육시설물 관리”를 삭제

나. 담당조정 : 본청 70담당 → 73담당(증3), 보건소 5담당→ 6담당(증1)

1) 신 설(5) : 정책개발, 약사도서관, 새주소, 드림스타트, 건강지원센터

2) 폐 지(1) : 주차관리

3) 명칭변경(3) : 통합조사 → 통합조사관리, 아동보육 → 보육,
건설행정 → 안전건설

3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및 규제사무심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작성제외

다. 입법예고 : 생략(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)
※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

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체육지원”을 “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”로 하고, 같은조제2항제6호 중 “지가조사 및 부동산관리”를 “지가조사 및 부동산관리, 새주소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, 통합조사, 생활보장, 지원연계”를 “생활지원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, 생활보장”으로 하고, “같은조제2항제2호 중 “복지서비스, 노인정책, 여성복지, 아동보육, 장애인복지”를 “노인정책, 여성복지 및 외국인 정책, 보육, 장애인복지, 드림스타트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건설방재과·도시과·교통행정과·디자인건축과·녹지공원과”를 “안전건설과·도시과·교통행정과·디자인건축과·공원녹지과”로 하고, 같은조제2항제1호중 “건설행정”을 “안전정책 총괄 및 건설행정”으로, 같은조같은항제6호중 “산림보호·녹지관리 및 공원관리”를 “공원관리, 산림보호 및 녹지관리”로, 같은조같은항제7호 중 “대형 체육시설물 관리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「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4항 중 “건설방재과장”을 “안전건설과장”으로 제13조제2호 중 “건설방재과장”을 “안전건설과장”으로 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3. (생략) 4. 평생교육,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, 도서정책, 체육지원,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5. (생략) 6. 민원1회방문처리제, 가족관계등록, 여권 업무, 지적공부관리, 지가조사 및 부동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</p>	<p>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, -----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지가조사 및 부동산 관리, 새주소 -----</p>
<p>제6조 (복지경제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주민생활지원, 통합조사, 생활보장, 지원 연계 등에 관한 사항 2. 복지서비스, 노인정책, 여성복지, 아동 보육,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 3. ~ 6. (생략)</p>	<p>제6조(복지경제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생활지원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, 생활보장 ----- 2. 노인정책, 여성복지 및 외국인 정책, 보육, 장애인 복지, 드림스타트 ----- 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 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 ① 건설도시국에 방재과·도시과·교통행정과·디자인 건축과·녹지공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. ② (생략) 1. 건설행정, 도로관리, 하천관리, 하수, 오수, 분뇨 등에 관한 사항 2.~ 5. (생략) 6. 산림보호·녹지관리 및 공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7. 비기술부서의 설계·심사·감독·준공 업무·신규프로젝트, 대형 체육시설물 관리, 그 밖에 공사관련 지시사항 처리</p>	<p>제7조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 ① ----- 안전건설과·도시과·교통행정과·디자인 건축과·공원녹지과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1. 안전정책 총괄 및 건설행정, ----- 2.~ 5. (현행과 같음) 6. 공원관리, 산림보호 및 녹지관리 ----- 7. ----- 설계·심사·감독·준공 업무·신규프로젝트, -----</p>

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6월 3일 · 중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(의안번호 제993호)
(2013년 6월 14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최일식 기획예산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1) 사회복지 업무 신설 및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
- 2) 안전정책 총괄 조직 개편 및 시설 건립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과 단위개편

가) 명칭변경

- (1) 건설방재과 → 안전건설과
- (2) 녹지공원과 → 공원녹지과(※ 공원녹지과 직제 : 공원관리 - 산림녹지)

2) 분장사무 조정

- 가) 행정지원국장 평생교육과 사무에 “체육시설물 관리”를
민원지적과 사무에 “새주소”를 각각 추가
- 나)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 사무 중 “주민생활지원, 통합조사, 생활보장, 지원연계”
를 “생활지원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, 생활보장”으로 조정하고,
사회복지과 사무 중 “복지서비스, 노인정책, 여성복지, 아동보육, 장애인복지”를 “노
인정책, 여성복지 및 외국인 정책, 보육, 장애인복지, 드림스타트”로 조정
- 다) 건설도시국장 건설방재과 사무 중 “건설행정”을 “안전정책 총괄 및 건설행정”으로
조정하고,
녹지공원과 사무 중 “산림보호·녹지관리 및 공원관리”를 “공원관리, 산림보호
및 녹지관리”로 조정하며,
시설지원과 사무 중 “대형 체육시설물 관리”를 삭제

3) 담당조정 : 본청 70담당 → 73담당(증3), 보건소 5담당 → 6담당(증1)

- 가) 신 설(5) : 정책개발, 약사도서관, 새주소, 드림스타트, 건강지원센터
- 나) 폐 지(1) : 주차관리
- 다) 명칭변경(3) : 통합조사 → 통합조사관리, 아동보육 → 보육,
건설행정 → 안전건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검토보고자 : 김진만 전문위원)

사회복지업무의 신설,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련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정책 업무는 신규업무 배정부서의 업무량, 정부·자치단체 상하간의 보고체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업무효율성을 감안 신중하게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